

법무매거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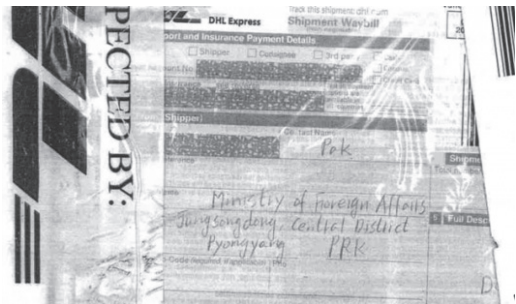
美 법원 “웬비어 승소 판결문”  
北이 받았다” 인정

미 법원이 ‘오토 웬비어 소송’ 판결문이 북한에 공식 송달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11일 보도했다. 북한에 17개월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석방되고 일주일 만에 사망한 미 대학생 웬비어의 가족에게 북한이 5억달러(약 5600억원)를 배상하라는 내용이 담긴 판결문은 지난 2월 북한 외무성에 도착한 후 미국으로 반송됐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지난 9일(현지 시각) 웬비어 측 변호인단의 ‘판결문 이행 요청서’를 승인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장인 베럴 하일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지난해 12월 24일 내려진 판결 내용이 지난 2월 14일 북한 측에 제대로 전달된 사실을 인정한다며 원고 측 요청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하일 판사는 결정문에서 “우편물이 반송됐고 법원에도 ‘배송 불가’로 기록됐지만 북한은 실제 우편물을 수신하고 서명했다.”고 했다.

앞서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웬비어 가족에게 북한 정부가 5억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가족 측 요구로 지난 1월 16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 앞으로 판결문을 보냈다. 판결문은 북한에 배송망을 갖추고 있는 국제우편 서비스 DHL을 통해 보내졌다. 이 판결문은 지난 2월 14일 북한 외무성의 ‘김성원’이란 인물에게 최종 전달됐지만 북한은 열흘 뒤 이 우편물을 다시 워싱턴 DC로 돌려보냈다.



〈북한 외무성이 오토 웬비어 소송의 미 법원 판결문을 반송하면서 DHL 봉투에 기재한 내용. 봉투에 적힌 주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중구역 중성동 외무성(Ministry of Foreign Affairs, Jungsongdong, Central District, Pyongyang, PRK)’으로 담당자는 ‘박(Pak)’으로 적혀있다. /미국의소리(VOA)〉

재판부가 웬비어 가족 측 변호인단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가족 측은 이를 근거로 5억 달러어치 배상금을 받기 위한 공식 이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웬비어 가족의 변호를 맡은 벤자민 해치 변호사 등은 지난달 26일 판결문 이행 요청서를 법원에 내고 “판결 시점과 송달 시점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최종 판결문 이행 명령이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해치 변호사는 판결 이후 3개월이 지나고 북한에 판결문이 송달된 지난 2월 14일 이후 5주가 지났지만 피고는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출처/조선일보)